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00-000590-10

Pride
GyeongBuk

사람중심!

2014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경 상 북 도
GYEONGSANGBUK-DO

차례

2014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1. 계약원가심사 개요

I. 2014 계약원가심사 실적	5
II. 2015 추진계획	8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 토목공사	13
- 건축공사	31
- 건설기술용역	49
- 학술연구용역	61
- 일반용역	93
- 물품구매 · 인쇄	111
- 시 · 군 자체심사 사례	135

3. 부 록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153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67

Part 1

계약원가심사 개요

I. 2014 계약원가심사 실적

II. 2015 추진계획



I. 2014 계약원가심사 실적

□ 총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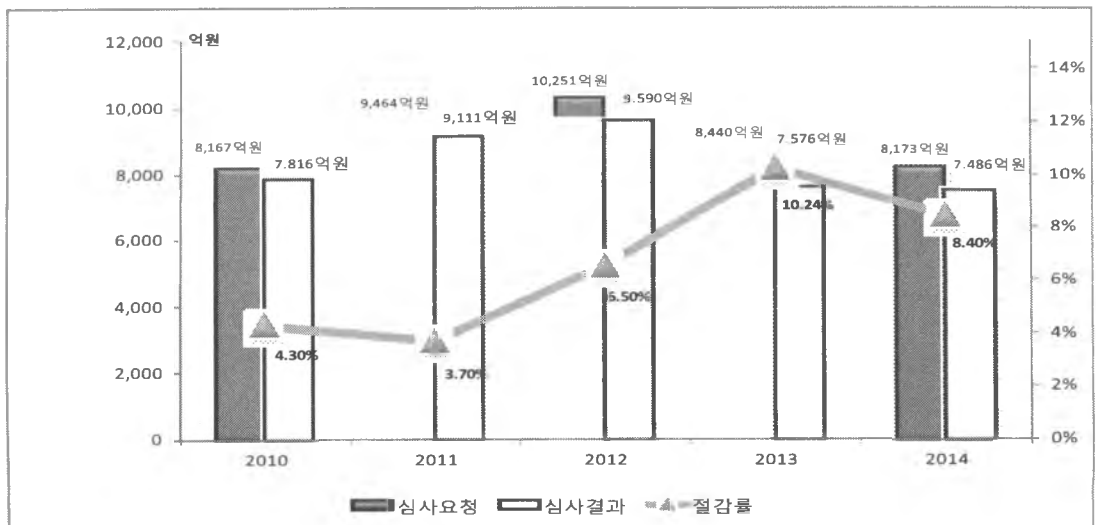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절감률
계	4,090	4,449,469	4,157,844	291,625	6.55%
2010	596	816,678	781,602	35,076	4.30%
2011	917	946,399	911,065	35,334	3.70%
2012	1,034	1,025,117	958,992	66,125	6.50%
2013	836	844,001	757,588	86,413	10.24%
2014	707	817,274	748,597	68,677	8.40%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계	2,227	228,961	6.38%	1,076	58,604	7.38%	562	4,060	8.29%
2010	329	23,703	3.70%	208	10,958	6.50%	59	415	9.00%
2011	603	23,529	3.10%	231	11,187	6.40%	83	618	10.00%
2012	612	50,761	6.10%	245	14,071	7.90%	177	1,293	6.90%
2013	273	72,406	10.60%	220	12,943	8.70%	118	1,064	9.80%
2014	410	58,562	8.41%	172	9,445	8.67%	125	670	5.75%

▶ 연도별 변동추이



□ 2014 심사실적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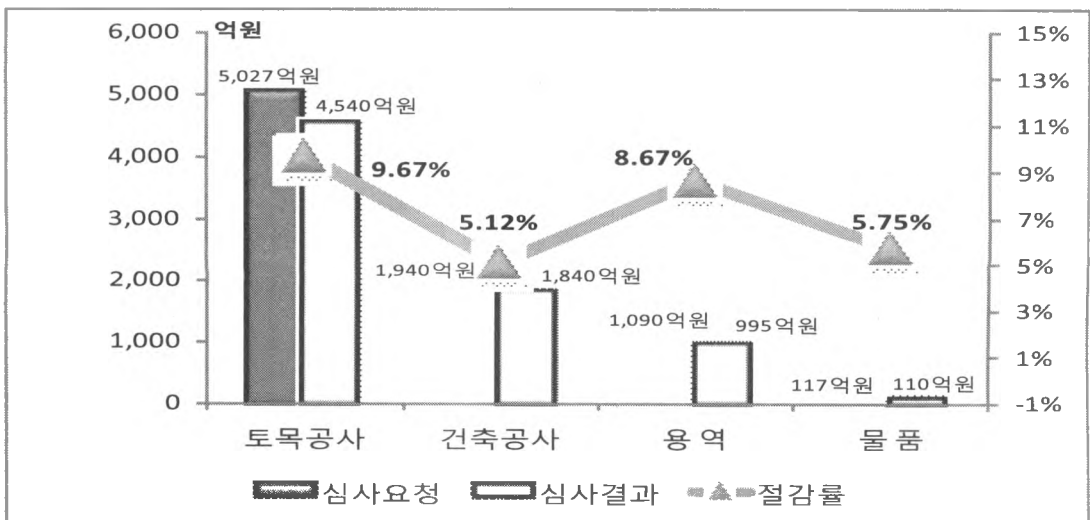
구 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 고
계	707	817,274	748,597	68,677	8.40%
토목공사	309	502,657	454,032	48,625	9.67%
건축공사	101	193,971	184,034	9,937	5.12%
용역	172	108,984	99,539	9,445	8.67%
물품	125	11,662	10,992	670	5.75%

●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 고
계	707	817,274	748,597	68,677	8.40%
본 청	91	46,430	44,244	2,186	4.71%
사 업 소	76	62,852	59,128	3,724	5.93%
출연기관	507	48,486	44,115	4,371	9.01%
시 · 군	33	659,506	601,110	58,396	8.85%

➤ 유형별 심사현황



□ 주요사례

● 자체 심사기준 적용으로 용역분야 예산절감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폐콘 15.4천원, 폐아스콘 16천원)
-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산정방식 개선(업체 산술평균)
- 학술연구용역 경비 기준단가 마련(7개 비목)

● 절감액 BEST

- ○ ○ 시 △ △ 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17.2억원)
- ○ ○ 군 △ △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14.5억원)
- ○ ○ 시 △ △ 교 설치공사(12.3억원)
- ○ ○ 군 △ △ 소하천 정비공사(11.9억원)
- ○ ○ 군 △ △ 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11.3억원)
- ○ ○ 사 △ △ 조성사업 △ △ 교 외 4개교 설치공사(11.3억원)

● 절감률 BEST

- ○ ○ 군 △ △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43.9%)
- ○ ○ 군 △ △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9.2%)
- ○ ○ 군 △ △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38.1%)
- ○ ○ 시 △ △ 길 조성사업(31.3%)
- ○ ○ 군 △ △ 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1.2%)
- ○ ○ 시 △ △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30.8%)

II. 2015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정한 계약원가심사로 사업원가의 적절성과 적법성 확보
- 계약원가심사 전문화로 심사능력 조기정착
-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 및 절감예산의 일자리창출 재투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심사부서의 기능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 원가계산 방식, 제경비 요율,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 · 견적가, 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부적정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되, 발주금액의 과소 책정으로 부실공사 예상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증감금액 기준은 ESC증가분을 제외한 금액
- 전기 · 소방 · 기계 · 통신 등의 전문공사는 도 및 시 · 군 대상기관 발주부서 자체 추진
 - 발주기관 및 부서 내부인력 활용
 -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 심사개요

- 대상기관 : 도, 공기업, 출연기관, 시·군(보조사업)
- 의무적 심사대상

대상사업		도	시 · 군
원가심사	공사	•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공사 : 3억원 이상	• 종합공사 : 3억원 이상 • 전문공사 : 2억원 이상
	용역	• 건설기술 : 2억원 이상 • 일반·학술 : 1억원 이상	• 7천만 원 이상
	물품	• 2천만원이상	•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 20억이상 공사, 10% 증가시	• 5억이상 공사, 10% 증가시

● 심사제외 대상

-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의 재해복구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의 여유가 없는 사업
- 조달발주,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100억원 이상) 사업
- 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별도의 수수료율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사업의 성격등 심사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업 등

□ 업무처리 절차

● 흐름도



□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용역 기관 안내

- 지방계약원가협회 소속(행정자치부)
한국원가관리협회 소속(기획재정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경북 경산시 성암로 11(옥산동 2층)	381-5523
(재)한국경제기획원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지산동 3층)	766-0038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대구 남구 대명로 262(대명동 제일빌딩 3층)	652-4488
(재)한국산업평가연구원	대구 동구 화랑로 201(효목동 3층)	958-0950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대구 수성구 용학로 157(지산동 3층)	767-3111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대동)	810-3710

□ 계약원가심사 담당자 현황

직위(급)	성 명	분 야	담당지역	전화번호
원가감사 담당	권오춘	원가심사 총괄		950-3096
시설6급	최금렬	토목 공사·기술용역	시지역(포항,경주,안동 제외) 군지역(군위,의성,청송)	950-3098
"	박임상	"	시지역(포항,경주,안동) 도, 출자출연기관	950-2044
시설7급	홍성진	"	군지역(군위,의성,청송 제외)	950-3088
"	최상욱	건축 공사·기술용역	전 지역	950-3063
전산6급	여근동	일반·학술 용역 물품구입	일반 : 도, 시군 학술 : 시군 물품 : 본청, 소방관서	950-3635
공업6급	신명섭	"	일반 : 출자출연기관 학술 : 도, 출자출연기관 물품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950-3638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건설기술용역
- 학술연구용역
- 일반용역
- 물품구매 · 인쇄
- 시 · 군 자체심사 사례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토 목 공 사

○○천(○○지구) 하천재해 예방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도 ○○○○사업소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공 L=3.325km(교량 3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169,330	4,742,300	427,030	8.2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축 제 공	• 성토면고르기를 인력시공보다 경제적인 기계시공 적용
호 안 공	• 사급자재로 계상된 주요 부자재(부직포, 흙판 등)를 관급 자재 적용(제경비 절감)
포 장 공	• 콘크리트 신축줄눈 설치 : 콘크리트포장절단+수축줄눈 → 콘크리트 포장절단
구조물공	• 라멘교와 슬라브교의 교면방수를 도막식보다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침투식으로 적용 • 하천 내 교량 되메우기 품은 시공여건에 맞게 바다짐 적용
부대공	• 구조물혈기 들어내기 백호우 작업효율(E) 0.35→0.45 적용 • 현장사무소 면적을 직접노무비 기준(30억 이하)에 맞게 조정 350㎡→230㎡ • 순성토 운반량 10,000㎥ 이하로 축중기 설치 제외 • 세륜기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인입을 발전기(50kw)보다 경제적인 한전 전기인입 적용 • 시공 및 계상 근거가 불명확한 연구개발비, 준공도서 작성비, 시공측량비 적용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소하천 정비 L=3.787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189,770	3,000,000	189,770	5.9%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토공	• 흙쌓기(노상,노체) → 단순 성토구간 비다짐 적용 • 기존구조물 깨기 → 들어내기(규격 1.0m³)적용 • 성토면고르기(인력→기계 100%) 적용
교량공	• 철근가공및조립→ 공장가공, 현장가공 구분 적용 → 철근완제품(8m)가공품 제외 • 홍수벽 철근가공조립(보통 → 간단)적용
부대공	• 가배수관(흙관→파형강관)적용 및 손율적용 • PP마대쌓기 수량 조정 • 식생옹벽블럭 소운반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간 도로개량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도(○○○○사업소 ○○지소)
- 사업량 : 선형개량 L=1.527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036,600	2,875,900	160,700	5.3%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토공	• 흙깎기(발파암 대형브레이커) → 작업능력 Q=5m³/hr 적용 • 유용성토(발파암) → 소할단가 제외 •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거적덮기 중복 계상 제외 • 아스팔트 포장깨기 → 작업능력 Q=16m³/hr 적용
배수공	• 가도구간 배수용 L형 측구(L=176m) 시공 제외 (깨기수량 및 폐기물 처리 수량 제외)
구조물공	• 신축이음(견적가) → 품셈단가 적용 • 구조물 뒷채움골재 발파암 유용
포장공	• 임시 공사용 우회도로 동상방지층 제외
부대공	• 가도 톤마대쌓기및헐기 → 톤마대쌓기 수량조정 및 품셈기준 인력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간 도로개량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도(○○○○사업소 ○○지소)
- 사업량 : 선형개량 L=3.0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973,000	4,584,670	388,330	7.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거적덮기 중복 계상 제외 • 성·절토 거적덮기 구간 면고르기 제외
배수공	•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인력 제외(기계100% 적용)
배수공 구조물공	•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적용
부대공	• PP마대 쌓기 및 헐기 → 품셈기준 인력 적용 • 골재운반 덤프(15ton → 24ton)비교 적용 • 환경보전비 제외 → 제경비 요율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탐방 바닷길 조성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데크로드 L=475m, 전망대 1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98,900	671,400	227,500	25.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전망대 및 데크로드	• 전망대 기초공사 천공 중복계상 - 천공(토사) 68m → 17m - 천공(풍화암) 34m → 9m - 천공(연암) 34m → 9m - 그라우팅 136m → 34m • 매물부분 H-FILE 도장 과다계상(열용사 코팅) - H-FILE 도장 1,589㎡ → 1,462㎡ • 데크로드 및 전망대 기초 H-FILE 제작 - 테크 경량형강 철골조립 → 철골가공 및 조립+철골 세우기품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권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공사
- 사업량 : 단지개발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008,447	6,116,700	891,747	12.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공동주택지(1번 블록) 원형지 공급(순성토량 조정) 순성토 운반 : 77,769 → 51,502m ³ 블록노체 다짐 : 68,237 → 40,705m ³ 기타 토공 조정 1식
구조물공	•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기계 70%+인력 30% → 기계 100%로 조정
우, 오수공	• 육안 점검이 가능한 관경 800mm 이상 우수관 CCTV 촬영 제외(△ 152m) • 우수공 저류조 방수 → 실적공사비 적용
자재대	• 직접 구매 후 공급이 가능한 시멘트 관급자재로 변경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3.787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189,770	3,000,000	189,770	5.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	• 흙쌓기(노상,노체) → 단순 성토구간 비다짐 적용 • 기존구조물 깨기 → 들어내기(규격 1.0m')적용 • 성토면고르기(인력→기계 100%) 적용
교량공	• 철근가공및조립→ 공장가공, 현장가공 구분 적용 → 철근완제품(8m)가공품 제외 • 홍수벽 철근가공조립(보통 → 간단)적용
부대공	• 가배수관(흙관→파형강관)적용 및 손율적용 • PP마대쌓기 수량 조정 • 식생옹벽블럭 소운반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레저타운조성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카라반 캠핑장 1식, 주차장1,775m²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227,813	4,027,482	200,331	4.73%

□ 주요 심사내용

● 토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사토운반거리 조정 L=5.0km → L=3.0km
오수공	• 수밀시험 등 시험비 경비로 계상
포 장 공	• 캠핑장 아스팔트포장(인력포장 → 기계포장) 조정
우 수 공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D300) 부설 인력품 품셈적용(배관공 0.31→ 배관공 0.21)
부 대 공	• 주차장/등산로 지구 가설사무실 수량 조정검토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각 1개 반영 → 가설사무실 1개 삭제(수상레저 이용) • 주차장/등산로 지구 세륜시설 손료 실공사 기간 반영 6개월 → 3개월

● 건축

항 목	심 사 결 과
철근콘크리트공	• 합판거푸집 사용횟수 3회 → 4회
철 골 공	• 부대철골가공조립 : - 철골공 0.004 → 0.003인/kg(간단) - 철골공 4 → 3인/톤(간단)
금 속 공	• 천장몰딩설치 : 0.0365 → 0.033인/m
조달청 가격정보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비닐무석면타일깔기 : 12,110 → 6,024원/㎡ - 화강석붙임(습식,바닥) : 71,380 → 33,900원/㎡ - 경량철골천정틀 : 25,496 → 9,990원/㎡
기 타	• 떡매김 - 건축목공 0.018 → 0.015인/㎡ - 건축목공 0.006 → 0.005인/㎡ - 건축목공 0.0255 → 0.021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 업 량 : 받기반정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25,077	691,558	233,519	25.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비탈규준틀 설치 과다 (절취 및 성토 높이가 1~2m 이내로 전구간 설치 불필요) • 터파기품 적용 부적정 수중터파기 → 물푸기 + 용수터파기
부대공	• 공사규모에 따른 가설사무실 규모 과다 총공사비 기준 면적적용 → 직접노무비 기준 면적적용 • 퇴직공제 부금비 적용 누락 → 반영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 지구 소규모 용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저수지 축조 1식(제체연장 L=207m, H=32.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509,713	5,212,196	297,517	5.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암반 면고르기 품 적용 과다 암반청소 + 면고르기 → 암반청소 (암반청소품에 면고르기품이 포함됨) • 개거주변 되메우기 적용 과다 되메우기 + 다짐 → 되메우기 (다짐 불필요 구간)
구조물공	• 레미콘타설 품적용 부적정 인력타설 → 펌프카 타설 (대량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이 효율적) • 철근 가공조립 품적용 부적정 현장가공 → 공장가공
부대공	• 자재운반비 항목분류 부적정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 경비성항목 적용 • 품질관리비 횡수 과다 →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 소재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공원 및 쉼터조성 1식(A=4,990m²)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68,000	737,000	231,000	23.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포장공	• 인도 포장공법 적용 과다 - 화강판석 포장(건축물 실내바닥용) → 투수블럭 포장 (용도에 적합한 공법 적용)
시설물공	• 야외화장실 규모 과다(이용자수의 규모에 적합한 규격) 7650×3610×3470 → 2400×2400×3800 • 조경석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 사급자재(운반비 별도 45,000원/톤) → 관급자재(운반비 포함 30,000원/톤)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공사
- 사업량 : 공원조성 7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727,430	4,215,510	511,920	10.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조경공	• 마사토포장 두께 적용 과다 T=150 → T=100(인도용) • 조경석 자재 규격 및 품적용 과다 규격 : 600×700×850 → 400×500×600 공법 : 정원석 쌓기 → 전석쌓기 • 잔디식재 공법 조정 평떼 → 줄떼 (미관이나 사면보호에 지장없는 범위내)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 신도시 조성사업 설계변경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공사
- 사업량 : 신도시조성 1식(A=4.744km²)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1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증6,289,776	증5,659,686	630,090	10.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목공사	• 잔디블럭포장 규격 과다 T=10cm → T=8cm (기존 규격 적용) • 현장사무실 설치 과다 추가공정 별도 현장사무실 적용제외 (기존 사무실 이용)
조경공사	• 잔디식재 단가산출 부적정 자재대 과다 및 변경품셈 적용 • 데크 철골설치 품적용 부적정 잡철물제작 설치 → 경량형강 철골조 설치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 우회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사업소○○지소
- 사 업 량 :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L=1.07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3,479,300	3,134,300	345,000	9.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흙깎기 장비적용 부적정 백호우(0.7m³) → 도자 (19Ton)
배수공	• 레미콘타설 품적용 부적정 : 인력타설 → 펌프카 타설 (대량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이 효율적) • 철근 가공조립 품적용 부적정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전석 및 석축쌓기 품적용 부적정 뒷채움콘크리트 타설품 제외(쌓기품에 포함됨) • 합판거푸집 → 유로폼 적용
교량공	• 교량하부 되메우기 : 다짐 → 비다짐(다짐 불필요 구간) • LMC교면포장 품적용 과다 : 포장 준비공 이중적용 • 가도설치 방법 변경 : PP마대 → 톤마대
부대공	• 차선도색 적용 부적정 : 융착식 → 페인트식 (설계기준) • 품질관리비 적용 과다 →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교 가설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 업 량 : 교량가설 L=113m, B=31.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570,200	6,336,400	1,233,800	16.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교량공	- 상부공 - • 교면포장 공법적용 부적정 LMC 초속경(고가) → 조강 LMC • 거더제작 교량형식적용 부적정 연속플레이트교 → BOX거더교 • 강교가설 품적용 부적정 견적에의한 단가적용 → 표준품셈 적용 • 강교제작 운반비 적용 부적정 전남 장성 제작장 적용 → 현장인근(포장) 제작장 적용 포스코~제작장 운반비 제외(자재대에 포함됨) 제장장~현장 운반비 과다 재 산정(실제 운반거리 적용) - 하부공 - • 교좌장치 설치단가 산출 부적정 : 견적 → 표준품셈 • 교대, 교각 거푸집 적용 부적정 : 합판3,4회 → 유로폼 • 교대 철근 가공조립 적용 부적정 : 복잡 → 보통 • 교각 철근 가공조립 적용 부적정 : 매우복잡 → 복잡 • 교량점검로 적용 부적정 : 설치 미대상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건 축 공 사

고려○○ 관어대[정자]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관어대(정자) 66㎡, 석축 49.8m 등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16,905	585,628	31,277	5.0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비율	• 2014개정기준 적용 - 산재보험료 : 3.7%→3.8% - 고용보험료 : 0.79%→0.8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8%→2.93%
운반비	• 경운기 주행속도 : 불량 → 보통
일위대가	• 야산지 할증 : 접근성, 부지 경사도 등 감안하여 조정 - 25% → 15%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개정된 제비율 적용, 부지여건 감안하여 할증 및 운반속도 적용

○○유림회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축연면적 159㎡ 1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11,276	570,590	40,686	6.6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비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억미만 적용 - 1.86%×5,349천원→2.93%
지붕공사	• 강회다짐, 보토다짐 : 처마고 3.6m이하 적용 • 한식기와잇기(맞배집) : 처마고 3.6m이하 적용 - 한식와공 : 0.085인/㎡→0.04인/㎡ - 한식와공조공 : 0.255인/㎡→0.11인/㎡ - 보통인부 : 0.561인/㎡→0.18인/㎡
미장공사	• 콘크리트면마무리 : 견출공 0.013인/㎡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처마높이에 따른 지붕공사 노무비(품) 차등 적용
- 미장공사 개정 품셈 적용 등

○○산학연 유치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업무시설 11,328㎡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909,284	9,801,869	107,415	1.0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 파일항타 : 지상돌출부분 50cm 항타길이에 공제 - 7,220m → 6,981m • 되메우기 : 토목단가와 동일 적용
조적공사	• 0.5B, 1.0B벽돌쌓기 : 보강근 노무비 삭제(쌓기폼에 포함) • 8인치 블록보강쌓기 - 조적공 0.2→0.17, 보통인부 0.1→0.09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삭제
금속공사	• 스틸난간대설치(옥상,기계실) : 잡철물제작설치→잡철물제작+난간설치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파일항타시 실제 항타길이 검토하여 공제
- 조적공사 개정품셈 적용 등

○○청소년수련원 개축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수련원 2,575㎡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988,875	3,781,711	207,164	5.1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강관틀비계매기→이동식말비계(다목적강당은 예외)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 : 빌트업→롤세입 • 부대철골가공조립 : 4인→3인
목공사	• 무대하부구조틀설치, 이동식경사로 - 잡철물제작설치→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비내력식)
금속공사	• 천정점검통로 : 잡철물제작설치 보통→간단
기 타	• 덕매김 : 0.0325인/㎡→0.024인/㎡ • 부스타펌프 관급구매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현장 높이(층고) 감안하여 내부비계 선정
- 금속공사 부재 규격 및 간격 감안하여 공중 선정

○○ 도서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도서관 2,197 m^2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215,284	2,994,481	220,803	6.87%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조적공사	• 시멘트벽돌 105천매 : 3.6m초과→3.6m이하
금속공사	• 알루미늄시트 :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3t평판 : 140천원/ m^2 →115천원/ m^2 - 2t평판 : 120천원/ m^2 →100천원/ m^2
인테리어	• 건축물현장정리 삭제 : 가설공사에 산정됨
토목공사	• 집수정설치 : 합판거푸집→유로폼
조달청 가격정보 (‘14상반기)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석재판붙임, 화강석붙임, 경량철골천정틀, 수성페인트칠 관보온재, 배관용탄소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볼밸브 등
기타	• 잔토처리 : $K=0.9$ → 1.1 , $E=0.65$ • 먹매김 : 0.0495 인/ m^2 → 0.041 인/ m^2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금속공사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등

○○마을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퇴락가옥 35가구 보수정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897,340	1,729,000	168,340	8.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공사기간(3개월) 및 규모감안 : 가설덧집→우장막
기초,기단, 석축 등	• 거친돌쌓기및해체, 터파기 : 인력→기계(협소지역 일부제외)
운반공사	• 자재야적장 운반 : 8톤→15톤
수장공사	• AL몰딩설치 : 내장공 0.0365인/m→0.033인/m
담장공사	• 토석담장 : 장00가옥 담장 붕괴부분만 물량산정
기 타	• 유00가옥 아래채 해체후 재설치 삭제 - 석축공사(인력)를 위한 해체 불필요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소규모 보수공사 가설덧집 제외 적용
- 인근 석축공사를 위한 가옥 해체 필요성 검토

○○문화공원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초가 6동, 누각 1동 등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587,300	1,471,480	115,820	7.3%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기초공사	• 거친돌쌓기(0.035m^3 이하) : 인력→기계
목공사	• 목재가격 조사단가 적용 - 각재(육송, 특수재) : 18,000원/재→12,000원/재 - 판재(육송, 특수재) : 15,000원/재→14,000원/재
운반공사	• 담프 8톤→15톤, 재료비, 노무비를 일괄경비로 합산
수장공사	• 반자틀설치(일위45호) : 우물천장→넌천장 - 철 못 : $0.075\text{kg}/\text{m}^2 \rightarrow 0.065\text{kg}/\text{m}^2$ - 건축목공 : $0.66\text{인}/\text{m}^2 \rightarrow 0.22\text{인}/\text{m}^2$ - 보통인부 : $0.063\text{인}/\text{m}^2 \rightarrow 0.021\text{인}/\text{m}^2$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목재가격 2인 이상 견적조사가 적용
- 반자틀 설치시 반자 형상에 따라 구분 적용

○○문학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량 : 문학관 3,267㎡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511,340	6,099,775	411,565	6.32%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가설공사	• 가설전력인입비 삭제 : 기타경비 항목임 • 하이드로크레인 경비 삭제 : 불필요 공종임 • 육우당 가설사무실 삭제 : 중복설치
기초공사	• 터파기 : 기계80%+인력20%→기계100%
미장공사	• 라임계 천연물탈→본타일 - 계단아래 등 미적인 필요성 적으므로 일반사양으로 변경
조적공사	• 스트롱앙카, 모르타르받이메쉬 노무비 삭제 - 블록쌓기품에 포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기타경비 항목 검토, 높이 등 감안하여 크레인 적용 검토
- 자재 선정시 설치 위치에 따라 미적인 요소 필요여부 검토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산업관 $4,413m^2$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072,868	2,012,906	59,962	2.8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 잔토량 $562m^3$ 를 토목공사 순성토로 유용하여 공제
목공사	• 먹매김 : 건축목공 $0.0495인/m^2 \rightarrow 0.041인/m^2$
수장공사	•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천정) - 내장공 : $0.1032인/m^2 \rightarrow 0.029인/m^2$ - 보통인부 : $0.0264인/m^2 \rightarrow 0.023인/m^2$ • AL몰딩설치 : 내장공 $0.0365인/m \rightarrow 0.033인/m$
토목공사	• 순성토운반 : 덤프트럭 - 적재시간(t_1) 10분 초과로 유류대 공제, 15톤 $\rightarrow$ 24톤
기계설비	• 급수펌프(부스터), 저수조탱크 관급구매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건축, 토목 공사간 잔토 유용하여 공제
- 운반 규격, 적재 시간별 유류대 공제 검토

○○보건소 증축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보건소 연면적 $1,713m^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01,014	2,268,959	132,055	5.5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 터파기 : 기계90%+인력10%→기계100% • 잔토처리 : 버킷계수 0.9→1.1(양호) 작업효율 0.6→0.8(호트러진 상태, 양호)
수장공사	• 무대후로링설치 : 마루틀설치, 마루널(밑창,널)깔기품 합산 - 건축목공 $0.29\text{인}/m^2 \rightarrow 0.185\text{인}/m^2$ - 보통인부 $0.065\text{인}/m^2 \rightarrow 0.032\text{인}/m^2$ - 내수합판 할증율 10%→3% • 무대전면부설치 : 내수합판 할증율 10%→3%
기계설비	• 급수펌프(부스터) 관급 구매 • 스테인리스강관, 탄소강관 : 할증율 10%→5%
기 타	• 무빙월 전적서상 공과잡비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현장여건 감안하여 토공사 공법 적용
- 마루틀, 마루널 작업 순서 감안하여 후로링설치(품) 산정

○○문화단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량 : 한옥체험관 7개동 592 m^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112,200	6,504,880	607,320	8.54%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가설공사	• 공통가설 일괄경비로 계상 • 강관가설덧집→우장막 설치(덧집은 보수공사용임)
목공사	• 목재세부규격(육송, 다글라스 등) 명시 및 비교견적 적용시 세부품목별로 비교하여 최저가 적용
지붕공사	• 평삼문, 식당 기와이기 : 처마높이 3.6m이하 적용
수장공사	• 본채1, 별채1, 평삼문 등 : 널천장 부분은 우물천장과 구분하여 건설표준품셈상 널천장(품)으로 적용
철거공사	• 철근콘크리트벽 철거 : 소형→대형 • 해체재 미사용시 품의 40% 감 - 텍스, 합판 철거 : 건축목공 0.009인/m^2→0.006인/m^2 - 샌드위치판넬 철거 : 건축목공 0.06인/m^2→0.036인/m^2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가설덧집은 문화재보수공사에만 적용되어 제외
- 해체재 미사용시 노무비(품) 감액, 목재규격 세부명시 및 비교견적 적용

○○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량 : 석축 418m, 배수로 45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067,776	913,157	154,619	14.48%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토공사	• 터파기 : 기계90%+인력10%→기계100% • 잔토처리 : 바켓계수 0.9→1.1, 작업효율 0.6→0.8
석공사	• 뒷채움잡석 : 기존 뒷채움돌 전량 재활용 • 거친돌(박석)깎기 : 조경공사 정원석 놓기(건설표준품셈 4-6-1)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	• 레미콘, 철근 관급구매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석공사 기존 석재 최대 활용, 박석깎기는 품셈상 유사공종 적용
- 토공사 현장여건 감안하여 조정

○○마을 체험장 및 주변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생활체험관, 판촉담장 등 건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78,240	938,370	39,870	4.0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컨테이너가설사무소, 컨테이너가설창고 - 일괄경비로 계상(재료비+노무비를 경비로 합산)
기초 및 석공사	• 거친돌쌓기 - 인력 → 기계, 편수 3㎡/인 → 9㎡/인
조적 및 마감공사	• 시멘트벽돌쌓기 : 표준품셈에 의거 3.6㎡이하로 적용
판촉담장	• 지대석설치 : 인력→기계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거친돌쌓기 공법에 따른 편수 적용, 담장공사시 기계 적용 검토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체육관 2,223㎡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575,970	4,380,214	195,756	4.3%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철골공사	• H빔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950,000→865,000원/톤
금속공사	•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알루미늄복합패널(평판t=4) : 140,000→130,000원/㎡ - 알루미늄시트패널(평판t=3) : 130,000→115,000원/㎡ • 각파이프하지 : 잡철물제작설치→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할증률 10→5%
기계설비	• 배관용탄소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가스배관용탄소강관 : 할증율 10→5%
기타	• 고정식관람석의자, 수납석의자, 화장실칸막이 판금구매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강관 할증율 5% 적용, H빔 등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판금 구매 가능 항목 검토

○○농업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채류형주택, 시설하우스 등 건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079,350	3,932,951	146,399	3.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수장 공사	•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 : 마루널깔기품 적용 - 건축목공 0.11→0.09인/m², 보통인부 0.025→0.02인/m² • 내수합판바닥깔기 : 마루널깔기품 적용 - 건축목공 0.11→0.09인/m², 보통인부 0.025→0.02인/m² • 유공합판벽재붙임 : 수장합판붙임품 적용 - 건축목공 0.135→0.09인/m², 보통인부 0.015→0.01인/m² • 우물천정반자틀설치 : 2014품셈 적용 - 건축목공 2.64→0.66인/m², 보통인부 0.252→0.063인/m²
철골 공사	• H빔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890,000→865,000원/톤 • 철골가공조립(빌트업→롤셰입) : 철골공 2.48→1.7608인/톤 • 부대철골가공조립 : 4→3인/톤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2014.2.5)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수장공사 표준품셈상 유사공종 적용
- 철골공사 난이도에 따라 품 조정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건 설 기 술 용 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해양조사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480,000	1,154,450	325,550	21.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지반조사	• 해상지반 조사 위치 조정 및 시굴 깊이 조정 D=12m→10m
수치모형 시험	• 전적가 비교 검토 반영
기본및실시 설계	• 실시설계 사업규모를 기본계획 범위내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78호:2012.7.30)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서애문화공원조성계획 1식, 학봉문화공원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39,000	865,000	74,000	7.9%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경관성 검토	• 적용 근거 미비(제외)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원조성계획과 공원기본계획 중복 계상(기본계획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2014.7.3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78호:2012.7.30)

○○○항만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수치모형실험, 해양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설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640,000	1,566,000	74,000	4.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모형실험 해양조사	• 실비 적용 재건적 처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 현황측량, 실시설계 자료 활용으로 현황조사, 계획수립 항목 등 제외 - 작업계획수립, 협의대상의 개요,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기초현황조사 항목 제외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실시설계 과업범위 중복 항목 제외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성과품인쇄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설계와 관련된 인쇄비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저류시설(V=13,000㎥)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50,364	582,087	68,277	10.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요율 재산정 - 기본 및 실시설계요율 1.4 → 1.3배 적용
토질조사	• 계획준비비, 현장답사비 제외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실시설계 과업범위 중복 항목 제외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 현황측량, 실시설계 자료 활용으로 현황조사, 계획수립 항목 등 제외 - 작업계획수립, 협의대상의 개요,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기초현황조사 항목 제외
제경비 기술료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기술료 20%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발주기관 : ○○시
- 과 업 량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L=3.77k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655,000	1,522,000	133,000	8.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질조사	• 시추조사비 과다 - 시추조사 52공 → 19공 (교량 등 주요구조물 등 필요구간 반영)
직접경비	• 보고서 인쇄비 제경비적용 부적정 - 공사비 효율에 의한 용역비 산정시 인쇄비 제경비 반영 제외 (유율에 포함됨)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개요

- 발주기관 : ○○시
- 과 업 량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511,000	2,371,000	140,000	5.5%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건설사업 관리자수 산정	• 공사유형 - 0.9(구조물공사) → 0.85(관로와 구조물공사의 평균값) • 지형특성 - 1.3(도시부) → 1.15(일반부와 도시부의 평균값) • 기성검사 시행비용 적용과다 - 12회(4회/년) → 6회(2회/년), 필요시 추가적용
제경비 등	• 손해배상 보험료적용 부적정 - 20억~30억 요율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실시설계수립용역

☐ 용역개요

- 발주기관 : ○○시
- 과 업 량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수립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91,320	363,2432	28,077	7.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제외 - 실시설계요율 $\times 1.4 \rightarrow$ 실시설계요율 적용 (기본설계 불필요)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공부)

○○음성 및 동문정비공사 감리용역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상주감리용역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06,860	564,645	42,215	7.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경비	• 난이도 : 복잡 → 보통 - 32 → 29인 · 월

☐ 심사근거 및 기준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 심사 착안사항

- 신축 구간 포함 여부에 따라 난이도 적용

○○공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00,000	1,170,000	30,000	2.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 경비	• 현장사무원 : 제조부문 시중노임(단순노무종사원) 적용 - 86,686 → 63,326원/인 • 부지면적, 형태 등 현장여건 감안하여 차량유지비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심사 착안사항

- 현장여건 감안하여 감독시 차량 필요여부 검토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학 술 연 구 용 역

○○○ 진단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진단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50,004	140,115	△ 9,889	△ 6.59%
인 건 비	122,510	118,983	△ 3,527	△ 2.88%
경 비	20,468	14,569	△ 5,899	△ 28.82%
기 타	7,026	6,563	△ 463	△ 6.59%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및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제6과제 참여인원 조정
 - 연구원 : 5명 → 4명
 - 연구 보조원 : 2명 → 4명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제1과제 ~ 제6과제 참여율 조정(고유업무수행 등 과다산정 감)
 - 책임 연구원 : 90% → 80%, 연구원 : 90% → 85%
 - 연구 보조원 : 90% → 85%, 보조원 : 90% → 80%

● 경 비

- 국내여비 인원 조정
 - 연구원 인원 5명 → 4명 (1명 감)
- 회의비 단가 조정
 - 500,000원 → 100,000원
 - ※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전산처리 내역 조정
 - 복사용지 46박스 → 35박스 (복사용지 과다산정, 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수 모니터링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시설, ○○수 모니터링 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2,871	142,380	△ 491	△ 0.34%
노 무 비	7,599	7,491	△ 108	△ 1.42%
경 비	110,209	109,912	△ 297	△ 0.27%
기 타	25,063	24,977	△ 86	△ 0.34%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과업수행인원 조정

- 인건비 퇴직급여 총당금 가산 산정함
 - 조사원인 분석 : 연구원 3명 → 2명, 보조원 2명 → 3명
 - 보고서 작성 : 연구원 2명 → 1명, 보조원 2명 → 3명
 - ○○삭감시설 보조원 단가 : 75,220원 → 76,197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안행부 예규 제74호('14.2.5)

● 경 비

- 유인물비 단가 조정
 - 보고서 A4 단가 조정 : 100원/장당 → 30원/장당(도 심사기준)

- 기타경비 산출내역서 조정
 - 전산장비 단가 및 사용기간 조정
 - 컴퓨터 : 1,000,000원 → 909,091원(부가세 제외)
 - 모니터 : 250,000원 → 227,273원
 - 프린터 : 450,000원 → 409,091원
 - 사용기간 : 8개월 → 9개월
 - ○○병 단가조정(조사 단가 적용) : 1,000원 → 902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19,023	118,018	△1,005	△0.85%
인 건 비	99,819	100,416	597	0.59%
경 비	13,536	11,981	△1,555	△12.98%
기 타	5,668	5,621	△47	△0.83%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및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제7과제 참여인원 조정
 - 연구 보조원 : 3명 → 4명
 - 보조원 : 2명 → 1명
 - 제1과제 ~ 제7과제 참여율 조정
 - 책임 연구원 : 30% → 25%
 - 보조원 : 40% → 35%
- 경 비
 - 유인물비 산출 내역서(2)
 - 복사비 단가 조정
 - 흑백(A4) : 40원 → 30원

- 전산처리비 산출내역
 - 프로그램 구입 단가 조정
 - 윈도우 : 313,000원 → 222,000원
 - 오피스 : 460,000원 → 240,0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조성 ○○플랜 수립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조성, ○○플랜 수립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27,320	118,897	△ 8,423	△ 6.62%
인 건 비	98,442	91,748	△ 6,694	△ 6.80%
경 비	11,794	11,194	△ 600	△ 5.09%
기 타	17,084	15,955	△ 1,129	△ 6.62%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과제별(5과제) 참여 연구원 참여율 조정
 - 참여율 조정
 - 연구원 참여율 : 60% → 55%
 - 연구보조원 참여율 : 60% → 55%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
- 경비 조정
 - 회의비 조정
 - 자문위원 수당 조정 : 100,000원 = 기본수당(70,000원) + 시간 초과수당(30,000원) → 기본수당(70,000원)
 - ※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프로젝트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 업 량 : ○○프로젝트 연구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59,870	147,451	△ 12,419	△ 7.77%
인 건 비	133,228	121,864	△ 11,364	△ 8.53%
경 비	19,030	18,566	△ 464	△ 2.44%
일반관리비	7,612	7,021	△ 591	△ 7.77%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조정
 - 제1과제 ~ 제11과제 참여인원 조정
 - 연구원 : 6명 → 5명
 - 연구원 보조원 : 4명 → 5명
 - 보조원 : 3명 → 2명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경비 조정
 - 회의비 조정
 - 회의비 회의 횟수 조정
 - (당초) 5명 × 5회 → (변경) 5명 × 4회
 - ※ 용역기간 6개월에 자문회의 5회로 과다 산정되어 4회로 1회 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 업 량 :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565	139,907	△ 9,658	△ 6.46%
인 건 비	105,899	96,759	△ 9,140	△ 8.63%
경 비	36,571	36,511	△ 60	△ 0.16%
일반관리비	7,095	6,637	△ 458	△ 6.46%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및 참여율조정
 - 제1과제 ~ 제5과제 참여인원 조정
 - 연구 보조원 : 2인 → 4인
 - 제1과제 ~ 제2과제 참여율 조정
 - 연구원 : 50% → 35%, - 연구 보조원 : 50% → 35%
 - 보조원 : 20% → 30%
 - 제3과제 참여율 조정
 - 연구원 : 50% → 35%, - 연구 보조원 : 50% → 35%
 - 제4과제 참여율 조정
 - 연구원 : 50% → 35%, - 연구 보조원 : 50% → 35%
 - 보조원 : 20% → 30%

- 제5과제 참여율 조정
 - 연구원 : 50% → 35%, - 연구 보조원 : 40% → 35%
 - 보조원 : 20% → 30%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

● 경비 조정

- 국내여비 조정
 - 국내여비 보고회 여비 조정
(당초) 연구보조원 2인 → (변경) 연구보조원 4인
 $2인 \times 3일 = 6일 \times 40,000원 = 240,000원(증)$
- 전산처리비 조정
 - 복사기 대여료
(당초) 90,000원/월 → (변경) 60,000원/월(감)
- ※ 물가자료 12월(하), 69쪽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19,825	115,850	△ 3,975	△ 3.32%
인 건 비	77,805	74,676	△ 3,129	△ 4.02%
경 비	16,723	16,723	△ 0	△ 0%
기 타	25,297	24,451	△ 846	△ 3.34%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제7과제 참여율 조정
 - 연구 보조원 : 40% → 35%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19,397	111,439	△7,958	△6.67%
인 건 비	95,747	89,528	△6,219	△6.50%
경 비	17,965	16,605	△1,360	△0%
일반관리비	5,685	5,306	△379	△6.67%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제4과제 참여율 조정
 - 책임 보조원 : 45% → 40%
 - 연구 보조원 : 50% → 45%
 - 보조원 : 50% → 40%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경비 조정
 - 전산처리비 조정
 - 전산처리비 중 산출기초 조정
(당초)14대 → (변경)10대(참여인원수)

- 회의비 단가 조정
 - 회이비 단가 조정
(당초)단가 20,000원 → (변경)단가 3,000원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유적 기본설계 및 수립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유적 기본설계 및 수립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25,088	113,558	△ 11,530	△ 9.22%
인 건 비	80,693	72,330	△ 8,363	△ 10.36%
경 비	17,764	17,051	△ 713	△ 4.01%
기 타	26,631	24,177	△ 2,454	△ 9.21%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과제별 참여 연구원 참여율 조정
 - 참여율 조정
 - 연구원 참여율 : 30% → 25%
 - 연구보조원 참여율 : 30% → 20%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
- 경비 조정
 - 여비 산출내역서 조정
 - 정밀실측 교통비
 - 교통비 내역서 중 유류비 부가세 이중계상되어 감처리

- 유인물비 조정
 - 조감도 단가 조정 : 1,500,000원/식 → 1,400,000원/식
 - ※ 시중가격 견적조사 단가적용
- 전산처리비 조정
 - 컴퓨터 내용연수 조정
 - 내용연수 : 4년 → 5년(데스크톱 컴퓨터)
 - ※ 조달청 고시 제2014-12호('14.5.23)
- 연구용 재료비 단가 조정
 - 디지털카메라 내용연수 조정
 - 내용연수 : 5년 → 8년
 - ※ 조달청 고시 제2014-12호('14.5.23)
- 회의비 조정
 - 보고회 경비 조정 : 10,000원 → 3,000원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유산 등재 추진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유산 등재 추진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32,936	129,795	△ 3,141	△ 2.36%
인 건 비	69,690	69,690	△ 0	△ 0%
경 비	36,364	33,814	△ 2,550	△ 7.01%
기 타	26,882	26,291	△ 591	△ 2.20%

□ 주요 심사내용

- 경비 조정
 - 유인물비 조정
 - 학술회의 논문집 본문인쇄 150면 → 100면
 - ※ 유사사례와 같이 전체 200면으로 조정 적용
 - 회의비 조정
 - 자문위원 수당 조정 : 100,000원 = 기본수당(70,000원) + 시간 초과수당(30,000원) → 기본수당(70,000원)
 - ※ 예산편성기준 적용
 - 학술회의 개최비 조정
 - 대관료 조정 : 1,000,000원 → 800,000원(연회장 식사)

- 식대 조정 : 중식코스(30,000원/1인당) → 한식코스(25,000원/1인당)
※ 유사기준 적용 가격조사 (대구 ○○호텔)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업자 서비스 평가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사업자 서비스 평가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681	135,999	△13,682	△9.14%
인 건 비	110,154	102,949	△7,205	△6.54%
경 비	32,399	26,574	△5,825	△17.98%
기 타	7,128	6,476	△652	△9.14%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4과제의 참여율 조정
 - 연구원 : 70% → 65%
 - 연구 보조원 : 65% → 60%
 - 보조원 : 60% → 55%
- 경 비
 - 여비 조정
 - 시·군별 여비 출장 횟수 조정
 - 22개 시·군 × 3회 = 66 → 22개 시·군 × 2회 = 44
 - 유가조정 : 5월 1주 경북지역 1,854.29원 →
5월 2주 경북지역 1,853.05원으로 조정

- 회의비 조정
 - 회의실 임차료 단가조정
 - 1,320,000원 → 880,000원
- 설문조사비 답례품비 조정
 - 답례품 단가 : 1,155원 → 924원으로 조정
 - ※ 건적조사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마을 정비 수립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마을 정비 수립 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38,310	129,030	△ 9,280	△ 6.71%
인 건 비	90,311	85,053	△ 5,258	△ 5.82%
경 비	18,554	16,511	△ 2,043	△ 11.01%
일반관리비 등	29,445	27,466	△ 1,979	△ 6.71%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과제별 참여 연구원 참여율 조정
 - 참여율 조정
 - 책임연구원 참여율 : 10% → 25%
 - 연 구 원 참여율 : 30% → 25%
 - 연구보조원 참여율 : 30% → 25%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
- 경비 조정
 - 여비 일수조정
 - 책임연구원 여비일수 조정 : 9일 → 8일
 - 연 구 원 여비일수 조정 : 72일 → 60일

- 연구보조원 예비일수 조정 : 72일 → 60일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및 예비규정
- 유인물 단가 조정
컬러 흑백 혼합인쇄 167원/면당 → 120원/면당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79,528	168,370	△ 11,158	△ 6.22%
인 건 비	137,371	129,391	△ 7,980	△ 5.81%
경 비	18,065	16,385	△ 1,680	△ 9.30%
기 타	24,092	22,594	△ 1,498	△ 6.22%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과제별(5과제) 참여 연구원 참여율 조정
 - 참여율 조정
 - 책임연구원 참여율 : 45% → 40%
 - 연구보조원 참여율 : 50% → 45%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
- 경비 조정
 - 여비 조정
 - 건물현황 조사 여비 일수 조정
4박 5일 → 3박 4일 : 과다산정 감 조정
 - ※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 회의비 조정

- 자문위원 수당 조정 : 100,000원 = 기본수당(70,000원) +
시간 초과수당 감(30,000원) → 기본수당(70,000원)

※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 업 량 :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59,901	146,808	△13,093	△8.19%
인 건 비	117,506	109,110	△8,396	△7.15%
경 비	34,781	30,707	△4,074	△11.71%
일반관리비	7,614	6,991	△623	△8.19%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제8과제 참여율 조정
 - 책임 연구원 : 35% → 30%
 - 연구원 : 45% → 40%
 -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경비 조정
 - 국내여비 조정
 - 국내여비 현장조사 횟수조정
(당초)5회 → (변경)4회

- 인쇄비 조정
 - 종합보고서
인쇄면수 조정 : 400면 → 350면 조정

- 회의비 단가 조정
 - 회이비 단가 조정
(당초)단가 100,000원 → (변경)단가 70,000원
(당초)단가 : 기본 + 2시간 초과 → (변경) 기본
※ 경상북도 원가심사 기준(2014. 2. 28)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1식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19,753	114,326	△ 5,427	△ 4.53%
인 건 비	92,695	89,175	△ 3,520	△ 3.80%
경 비	21,336	19,708	△ 1,628	△ 7.71%
기 타	5,722	5,443	△ 279	△ 4.88%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1과제 ~ 제5과제 참여율 조정
 - 보조원 : 50% → 35%
- 경 비
 - 국외여비 산출 내역서
 - 국외여비 단가 조정(상한액 → 할인정액)
 - 책임연구원 223\$ → 190\$
 - 연구원 155\$ → 150\$
 - ※ 여비규정(2013. 12. 11)

- 전산처리비 소프트웨어 단가 조정
 - 프로그램 구입 단가 조정
 - 윈도우 : 313,000원 → 222,000원 (물가자료 참조)
- 회의비 자문위원회 회의 횟수 조정
 - 자문위원회
 - 회의 횟수 : 5회 → 3회 (발주부서 협의 완)
- 교통 통신비 단가 조정
 - 팩스요금 조정(2종) 기본 : 300원 → 500원 (공공요금 기준)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일 반 용 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면소재지 마을리더 육성 및 특화사업 추진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75,000	334,488	40,512	10.8%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경비	• 교육장소 임차료 조정(면사무소 회의실, 마을회관 등 무료사용) • 국내견학 강사료 조성(과업지시서에 없음) • 국외견학 숙박료 안내서 기준으로 조정(120,000원 → 100,000원) • 안내서 기준 도농교류 사업의 체험비, 버스임차료, 숙박비 식비 등 지원 불가항목 조정 • 안내서기준 2,000만원 초과 지급 할 수 없는데도 초과하여 계상된 홈페이지 개발비 초과 금액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부분 예산계획 및 집행 안내서(농림수산식품부)

☐ 심사 착안사항

- 해당부처 예산계획 및 집행 안내서 준수사항 검토
-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을 산출내역서에 계상여부 검토

○○군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군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공사중 사후환경영향조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44,790	225,260	19,530	8.0%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가기준 변경적용	• 직접인건비 - 사업개요파악 항목 삭제(10% → 0%) ※ 사전환경영향조사시 파악된 항목으로 사후영향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함 • 직접경비 - 수질(침사지) 조사 내역 조정(환경영향평가보고서 기준 : 환경부제출) • 조사회수 조정(24회(월) → 4회(반기)) • 조사항목 조정(19개항목 → 4개항목) • 조사지점 조정(1지점 → 2지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268호)

□ 심사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에 없거나 불필요한 과업을 산출내역서에 계상여부 검토
- 환경부 제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과업지시서 상의 불일치 내용 등 검토

○○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 업 량 : ○○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14,000	193,527	20,473	9.6%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대가기준 변경적용	• 직접인건비 - 과업지시서에 없는 소음측정 인건비 감 • 기술료 요율 조정(30% → 20%)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268호)

☐ 심사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에 없거나 불필요한 과업을 산출내역서에 계상여부 검토
- 우리도 기준요율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면
- 사업량 : 상수도관로 등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구축
 - 도시기준점 측량(4급) : 88점
 - 상수도시설물 : 44.43km(조사/탐사 : 33.3km, 조사 : 11.13k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19,440	493,910	25,530	4.9%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경비	• 일상감사에 지적된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 계수 조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됨에도 반영되지 않아 조정 ※ 교외지 70%, 농경지 30% → 교외지 40%, 구릉지 30%, 농경지 30% - 상수도 관로조사/탐사 공정 - 정위치편집 공정 - 구조화편집 공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제1668호)

□ 심사 착안사항

- 일상감사 등 사전 검토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반영 여부 등 검토
- 해당 대가기준의 보정계수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 검토

○○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군 문화재발굴조사 2,857m²(정밀발굴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60,910	328,900	32,010	8.9%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경비 등	• 보정계수 조정(계절, 기후, 조사지환경, 약보고서 등 검토) - 조사조건(어려운 경우 100% → 80% : 20%) - 유구내용(어려운 경우 100% → 50% : 50%) • 효율조정 - 제경비(105%→100%), 학술료(25%→20%), 주재비(50%→40%) • 임차료, 인쇄료, 조사재료비 등 도 자체기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제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약보고서 및 조사대상지 조건과 다르게 보정계수 적용 여부 등 검토
- 우리도 기준효율과 기준단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군 전략환경영향평가(선사업 : 183k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119,800	905,992	213,808	19.1%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가기준 변경적용	• 직접인건비 - 중요도에 따른 소요인력요율 일부조정(100% → 50%) • 직접경비 - 대가기준에 없는 동·식물상 조사위탁비 감(120백만원) • 제정비(115%→100%), 기술료(30%→20%) 요율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제268호)

☐ 심사 착안사항

- 대가기준에 없거나 불필요한 과업을 산출내역서에 계상여부 검토
- 환경부 제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과업지시서 상의 불일치 내용 등 검토
- 우리도 기준요율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테마공원 조성사업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테마공원 문화재발굴조사 5,045m²(정밀발굴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02,094	389,774	12,320	3.1%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 주휴수당 오류지급 증액(8일 → 12일)
적접경비	• 주재비 계산오류 조정 주휴수당을 기초금액에 포함 → 주휴수당을 기초금액에 제외 • 잘못 계상된 현장인부 인력 조정(280일 → 240.8일) • 임차료, 조사재료비 등 道 자체기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제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대가기준에 따른 인력산출 및 제경비 산출 등의 적정성 검토
- 우리道 기준요율과 기준단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4,791톤(폐콘 3,699, 폐아스콘 709, 혼합 383)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87,290	131,450	55,840	29,8%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운반비 처리비	• 발주부서, 견적, 표준품셈, 협회단가 중 최저가 적용 • 잘못 산출된 혼합건설폐기물 수량 조정 ※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한 금속 및 철재 76톤 폐기물에서 제외 • 잘못 분류한 혼합건설폐기물 성상 조정 ※ 폐보드, 폐판넬이 없는 성장 및 처리비 조정(그 밖의 혼합건설폐기물(82,920원) →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41,023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운반비, 처리비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 검토
- 폐기물 수량산출서와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성상의 일치 등 여부

○○시 □□교 주변정비사업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문화재발굴조사 4,208㎡(건축유적)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2,900	327,238	15,662	4.6%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 보정계수 조정 - 토질 : 어려운 경우(100%) → 쉬운 경우(100%) - 조사조건 : 어려운 경우(100%) → (50% : 50%) - 유물내용 : 유구당 15점 이상 → 유구당 6 ~ 14점 - 유구식별난이도: 어려운 경우(100%) → (50% : 50%)
적접경비	• 부가세 이중계상 조정 ※ 부가세포함단가 적용후 원가계산서에 다시 부가세 적용 • 근거없이 과다 계상된 현장인부 인력 조정(627일 → 515일) • 임차료, 조사재료비 등 도 자체기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제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약보고서 및 조사대상지 조건과 다르게 보정계수 적용 여부 등 검토
- 대가기준에 따른 인력산출 및 제경비 산출 등의 적정성 검토
- 우리도 기준요율과 기준단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36,968톤(페콘 28,620, 페아스콘 8,298, 혼합 5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062,807	983,939	78,868	7.4%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운반비 처리비	• 발주부서, 견적, 표준품셈, 협회단가 중 최저가 적용 • 잘못 산출된 혼합건설폐기물 수량 조정 ※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한 금속 및 철재 13톤 폐기물에서 제외 • 잘못 분류한 혼합건설폐기물 성상 조정 ※ 폐유리, 페타일 없는 성장 및 처리비 조정(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76,950원) →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41,023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운반비, 처리비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 검토
- 폐기물 수량산출서와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성상의 일치 등 여부

○○군 □□공원 조성공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문화재발굴조사 2,000㎡(생산유적)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09,896	184,268	25,628	12.2%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 보정계수 조정 - 지형 : 산지(100%) → 평지(50%) : 산지(50%) - 유구밀도 : 높은 경우 → 보통인 경우
적접경비	• 현장인부임 단가 조정 - 기준일 오류적용(84,116원 → 86,686원) • 임차료, 조사재료비 등 道 자체기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제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약보고서 및 조사대상지 조건과 다르게 보정계수 적용 여부 등 검토
- 대가기준에 따른 인력산출 및 인건비 산출 등의 적정성 검토
- 우리道 기준요율과 기준단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면소재지 마을리더 육성 및 특화사업 추진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85,000	709,960	75,540	9.6%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경비	• 강사수당 조정(경상북도 외래강사수당지급기준적용) • 강사여비 조정(도내출장 기준초과금액 조정, 50,000원/회 → 32,000원/회) •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식비지급 조정(설계서 석식 10,000원 → 과업지시서 중식 7,000원) • 도농교류 이벤트에 지급할 수 없는 항목 조정 ※ 숙박비, 체험비, 식비 항목 삭감 • 기타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내용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부분 예산계획 및 집행 안내서(농림수산식품부)

□ 심사 착안사항

- 해당부처 예산계획 및 집행 안내서 준수사항 점토
-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을 산출내역서에 계상여부 검토

○○시 □□동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공사
- 사업량 : 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면사업 : 602,935 m^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21,801	192,855	28,946	13.1%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가기준 변경적용	• 직접인건비 - 수질, 소음, 친환경적자원순환 등 중요도에 따른 소요인력요율 일부 조정(50% → 20%) • 직접경비 - 환경질 측정 출장일수 조정(4일 → 3일)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268호)

□ 심사 착안사항

- 과업지시서에 없거나 불필요한 과업을 산출내역서에 계상여부 검토
- 우리도 기준요율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군 □□관광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10,351톤(폐콘 5,882 페아스콘 3,910, 혼합 559)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9,811	279,780	70,031	20.0%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운반비 처리비	● 발주부서, 견적, 표준품셈, 협회단가 중 최저가 적용 ● 잘못 산출된 혼합건설폐기물 수량 조정 ※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한 금속류 53톤 폐기물에서 제외 ● 잘못 분류한 혼합건설폐기물 성상 조정 ※ 건설폐재류로 분류된 폐콘크리트 성상 및 처리비 조정 건설폐재류(27,351 원) → 폐콘크리트(18,244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운반비, 처리비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 검토
- 폐기물 수량산출서와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성상의 일치 등 여부

○○군 □□고분군 시적공원 조성공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문화재발굴조사 4,785m²(생활유적)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25,172	341,902	83,270	19.6%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 보정계수 조정 - 유구밀도 : 보통인경우 → 낮은경우
적접경비	• 기준요율 조정 - 제경비요율 110% → 100% - 학술료요율 30% → 20% - 주재비요율 50% → 40% • 임차료, 조사재료비 등 道 자체기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제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3.3)

□ 심사 착안사항

- 약보고서 및 조사대상지 조건과 다르게 보정계수 적용 여부 등 검토
- 우리道 기준요율과 기준단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상하였는지 등 검토

종교·문화유산

Part 2. 문화유산



○○○ 시약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사업소
- 사업규모 : ○○ 등 11종 구매
- 사업물량 : 시약 등 11종 1,760점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시약 등 구매	143,677	135,452	△8,225	△5.72%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3개 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료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교
- 사업규모 : ○○사료 등 12종 구매
- 사업물량 : 사료 등 12종 3,955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사료 구입	43,859	42,981	△ 878	△ 2.00%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2개업체), 심사부서(1개 업체)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현판 등 제작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서
- 사업규모 : ○○안내판 12종 제작구매
- 사업물량 : 제작구매 12종 78점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등 제작구매	39,631	34,549	△5,082	△12.82%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시스템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사업장
- 사업규모 : ○○건조기 등 구매
- 사업물량 : 건조기 등 29종 64점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시스템 구매	416,337	403,317	△13,020	△3.13%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103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연마기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규모 : ○○연마기 구매
- 사업물량 : ○○연마기 1대 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연마기 구매	26,950	24,500	△2,450	△9.09%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2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장비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서
- 사업규모 : ○○장비 구매
- 사업물량 : ○○슈트 등 11종 25점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장비 구매	31,210	29,005	△2,205	△7.07%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적용기준 (2013. 3. 13)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농약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관리원
- 사업규모 : ○○입제 등 농약 구매
- 사업물량 : ○○입제 등 4,930포 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농약 구매	49,755	40,742	△9,013	△18.11%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적용기준 (2013. 3.13)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공통 교재 발간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학교
- 사 업 량 : ○○교재 14종
- 사업물량 : 총 5,515면, 발간부수 3,120부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교재 유인	44,674	40,205	△4,469	△10.00%

☐ 주요 심사내용

- 심사내용
 - 발주부서의 산출내역서와 심사부서에서 견적을 조사하여 최저금액으로 심사금액을 산정함.
 - 발주부서 내역서 (1개), 심사부서 견적조사 (1개 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용품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의료원
- 사 업 량 : ○○용품 등 구매 4종
- 사업목적 :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장래 예식시 저렴한 가격 및 양질의 장래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단가계약코자 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양복 등 4종 구매	30,000	24,270	5,730	19.1 %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전적조사(3개업체) : 사업부서 2개업체, 심사부서 1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소방대 피복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소방서
- 사 업 량 : ○○기동복 12종 구매
- 사업목적 : 관내 의용소방대에게 피복을 구매 지급하여 소방활동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소방대 피복구매	30,494	23,808	△6,686	△21.93%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견적조사(3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기준 1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재배 총서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험장
- 사 업 량 : ○○총서 1,000부
- 사업규격 : 16절(160mm × 240mm)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총서 구매	29,750	23,300	△6,450	△21.68%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견적조사(3개업체) : 사업부서 1개업체, 심사기준 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기타사항

- 심사한 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단가가 낮은 항목이 있는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하기 바람.

○○제어 시스템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담당관
- 사 업 량 : ○○시스템 2셀
- 사업목적 : 네트워크 서비스와 트래픽의 관리·제어를 통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제어 시스템 구매	295,000	268,244	△26,756	△9.07%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견적조사(5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기준 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기타사항

- 심사한 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단가가 낮은 항목이 있는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하기 바람.

○○재난 대응장비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고조단
- 사업량 : ○○재난장비 셀
- 사업목적 : 특수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요원이 사용할 구조장비 셀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특수장비 구매	145,453	138,156	△7,297	△5.02%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전적조사(5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기준 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예산목의 단일부기는 분리발주를 자제하기 바라며, 불요 불급한 사유로 분리발주시는 회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사유를 명시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패 제작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 업 량 : 3,500개/년간 정도
- 사업목적 : 도정발전 유공 민간인 및 민간단체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패 제작 구매을 위한 단가계약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패제작 구매	185,500	146,300	△39,200	△21.13%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전적조사(5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기준 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용품 등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의료원
- 사업량 : ○○관 등 18종, 1,301점
- 사업목적 :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장래 예식시 저렴한 가격 및 양질의 장래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단가계약코자 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관 등 18종	93,591	76,519	17,072	18.24 %

☐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견적조사(5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기준 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 9. 26)
- 2014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4. 2. 28)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업소 □□용 톱밥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사업소
- 사 업 량 : □□용 톱밥(펠렛) 구입(386,670kg)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5,334	117,161	18,173	13.43%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경비	• 발주부서,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단가 적용 ※ kg당 단가 조정(350원 → 303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시험분석 시약 및 소모품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연구원
- 사업량 : 시약 및 소모품 디브로모아세트산 등 111종 404점 구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4,409	42,983	1,426	3.21%

□ 주요 심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직접경비	• 발주부서,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가격 적용 - 견적조사 :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사업소 2암 랩피복기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사업소
- 사 업 량 : ○○사업소 2암 랩피복기 구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9,270	36,905	2,365	6.02%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경비	• 발주부서,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가격 적용 - 견적조사 :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사업소 어류 초기먹이 알테미아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사업소
- 사 업 량 : 어류 초기먹이 알테미아 구매(100상자)

☐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6,000	55,000	11,000	16.67%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경비	• 발주부서,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가격 적용 - 상자당 단가 조정(660,000원 → 550,0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매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 업 량 :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41,700	36,400	5,300	12.7%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경비	• 발주부서,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가격 적용 - 견적조사 :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회의용 탁자 제조 구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
- 사업량 : 회의용 탁자 제조 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0,809	84,497	6,312	7.0%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재료비	○ 재료비 산출 방법 변경 - 개별 규격별 재료비 산출 → 규격판 구매후 제재원이 절단 사용						
	품명	심 사 전			심 사 후		
		규격(책상규격)	수량	단가	규격(4*8)	수량	단가
	목재 (MDF)	1100*800*30T	7	42,000	1220*2440*30T	34	50,000
		400*750*30T	14	14,000			
		1100*750*30T	88	42,000			
		750*680*23T	42	18,000	1220*2440*23T	73	35,000
		730*720*23T	176	23,000			
		1100*800*18T	102	16,800	1220*2440*18T	46	15,000
		650,750*400*18T	144	6,800			
		1220*2240*9T	14	24,000	1220*2440*9T	14	10,900
		1100*720*4.5T	88	9,500	1220*2440*4.5T	30	6,700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소식지 인쇄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원
- 사 업 량 : ○○소식지 인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1,225	56,000	5,225	8.5%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경비	• 발주부서, 심사부서 견적이 중 최저가격 적용 - 견적조사 : 발주부서(1개업체), 심사부서(3개업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심사 착안사항

- 구입방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 유무 등 검토
- 납품방법 등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감요인 유무 등 검토
- 폐지된 조달기준 및 물가자료협회 기준과 비교 과다 계상 검토



Part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사례

시·군 자체심사 사례

○○정수장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원수관로 이설 5개소(D 1,100m, L=2,063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000,000	4,472,770	527,230	10.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	• 터파기(인력) 작업량 조정 : 0.3(평균치)→0.2(최저치) 적용 • 터파기(발파암) 굴삭기 작업량 조정 : $Q=2.5m^3 \rightarrow Q=3.2m^3$ • 되메우기 투입장비 조정 : 콤팩트롤러 1.4톤→진동롤러 2.5톤
시공공법 자재단가 부 대 공	• 관로공 접합 공법변경 : 이탈방지 압륜접합→KP접합 • 공기밸브 개소 조정 : 2개소→1개소(불필요 장소 내역삭제) • 부단수 차단공 자재단가 조정 - Stopple Fitting 외 5종 단가 감 조정(조사가격 적용) • 안전보호시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기간 조정 : 240일→120일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103호)

○○하수 간선박스 설치사업 주변 조사용역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지반조사·시험, 하수박스 안전진단, 우수배제기본계획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50,000	81,600	68,400	45.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지반조사 및 시 험	• 지반조사 및 시험 공수 조정 - 보링조사 5공(20m/공)→보링조사 2공 적용(△3공) 【'02. 12, 2005. 6 / 지반조사 용역 자료활용】
우수배제 기본계획	• 우수배제 기본계획(측량·기본계획) 과업 검토 - 우수배제기본계획 설계→우수배제기본계획 과업 삭제 【'03. 6 / 우창동 하수박스 정밀안전진단 및 대책 용역 자료활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103호)

○○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조경석쌓기 L=1,059m, 식생매트 설치 L=622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06,700	353,700	53,000	13.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호안공	• 식생매트 설치 계획홍수위 이상 여유고 구간 제외 - $A=3,888\text{m}^2 \rightarrow A=2,616\text{m}^2$ • 조경석 쌓기 정원석쌓기 → 조경유용석쌓기품 적용 - 조경공 0.836 → 0.084, 석 공 0 → 0.251 - 굴삭기 0.684hr → 0.588hr
부대공	• 자재(레미콘, 철근, 혼합골재) 소운반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교 개체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 업 량 : 교량개체(B=6.0m) L=59.6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70,000	449,000	21,000	4.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고재 처리비 반영 • 순성토운반 t1=10분 이상 유류대 공제 적용 • 공사용가도 설치 수량, 단가 재산정 - P.P마대쌓기 및 헐기 → 톤마대 적용 - 톤마대 수층부외 구간 설치 제외 - 흙관(D800) 40본 → 20본 조정
교량공	• 말뚝박기 단가 재산정 - N치 50이상 굴착시간 3min/m → 0.83min/m 적용 - 파일소운반 제외
제비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산정(5억원 미만 요율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 업 량 : 하천정비 L=392m, 하상정리 L=379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59,192	357,592	101,600	22.1%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터파기 및 되메우기, 성토 단가 재산정 - 기계90%+인력10% → 기계100% • 철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 고철 공제 적용 • 호안블럭헐기 설치품의 50% → 기계헐기 적용 • 사토운반 덤프트럭 15ton → 덤프24ton 적용
배 수 공 구조물공	•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 조립 적용 • 수로암거 철근가공조립 중복 계상 삭제
부대공	• 공사용가도 설치 수량, 단가 재산정 - P.P마대쌓기 및 헐기 → 톤마대 적용 - VR판 수량 조정(3열→2열) 및 3개월 손율 적용 • 공사설명판 경비성단가 적용
제경비	• 간접노무비 재산정(7개월~12개월 요율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교 보수보강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교량 상부 교면방수 A=6,801m², 신축이음교체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780,000	2,593,600	186,400	6.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단가조정(현장작업여건고려) - 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70%+인력30%+협소할증50%) → 소형브레이커100%적용 및 협소할증 50%삭제
구조물공	• 콘크리트 치핑 / 신규교좌장치설치(현장작업여건고려) - 공간협소할증 30% → 삭제 • 공중비계 제작설치(전구간 강관비계(계단식)적용부분 조정) - 강관비계(계단식) 924m² → 일반비계메기 적용 924m² 및 계단식비계 필요구간(156m²) 수량 검토하여 분리적용 • 무수축모르타르 타설(단위중량 착오기재 수정) - 무수축모르타르 단위중량 2,163kg/m³ → 1,911kg/m³ 적용
포장공	• 미끄럼방지포장(관급자재 적용) - 순공사비 79,672원/m² → 관급자재 34,000원/m²적용 (현장설치,부가세포함)
부대공	• 차량방호울타리 시공(현장확인 후 기시공된 부분으로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리 ○○○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매트리스돌망태 설치 $A=9,356m^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65,000	522,550	142,450	21.4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	• 흙깎기, 유용성토 단가 조정(제방작업시 전진1단, 후진2단적용) : 불도저 후진속도(V2) 46m/min → 70m/min
배수공	• 철근가공 단가 조정 : 현장가공 → 공장가공
호안공	• 매트리스돌망태설치 규격 및 단가조정 : $T=0.3m(6,744m^2)$, $T=0.4m(2,612m^2)$ → $T=0.3m(9,356m^2)$: 특별인부 0.05인, 보통인부 0.052인, 굴삭기(0.7)0.022hr → 특별인부0.01인, 보통인부0.01인, 석공0.027인, 굴삭기(1.0)0.025hr
부대공	• 랜잡석운반 단가 조정 : 운반장비조정 덤프15ton → 덤프24ton : 운반거리조정 56km(안동시 녹전면) → 36km(구미시 도개면) : 적재장비 조정 백호 $0.7m^3$ → 로더 $1.72m^3$: 적재시간(t1)10분 초과로 유류대 공제
제경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재료비+직접노무비) * 0.0293 + 5,349,000)*1.2 → (재료비+직접노무비) * 0.0293 * 1.2 • 이윤조정(예산절감취지) : 15.00% → 14.00%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1호)

○○~○○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도로개설 및 언더패스정비 L=420m, B=8.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19,437	386,185	33,252	7.9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합판거푸집 수량산출 오류 수정 - 구조물구간 거푸집 공제물량 반영 - 면적산출 착오계상분 수정
자재	• 자재 수급방법 변경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혼합쇄석 $\phi 40, 75\text{mm}$: 18,000원/㎥ → 15,210원/㎥ - 계비온 채움석 $\phi 100\sim 150\text{mm}$: 19,000원/㎥ → 23,910원/㎥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 폐콘크리트 : 15,000원/톤 → 12,000원/톤 - 폐아스콘 : 16,000원/톤 → 13,000원/톤 - 폐기물운반비 : 협회단가 → 덤프트럭 산출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체육공원 주차장설치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주차장(잔디블록)설치 1,220m² 콘크리트포장 6,633m²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19,500	187,720	31,780	14.47%

□ 주요 심사내용

- 잔디블록설치(호안블록붙이기(기계)품으로 조정)
 - 블록설치(특별인부) 0.015 → 0.017 블록보조(보통인부) 0.03 → 0.007
 - 크레인 0.08 → 0.048
- 콘크리트포장(현장 작업여건 고려)
 - 일당 시공량 50m² 적용 → 100m²로 조정
- 법면보호공(줄페)
 - 소운반(지게), 작업반장 계상 → 소운반, 작업반장 삭제
- 황토포장
 - 표면처리 계상 → 표면처리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전기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전기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305,175	2,003,220	301,955	13.10%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공통	• 예정가격작성 ⇨ 단가조사서에 1식 견적은 지향 • 정보통신(계측제어)공사 적용방법 ⇨ 통신품셈적용 • 분리 설계예산서 작성 ⇨ 통합 작성(취정수장,통합배수지) • 도급공사와 관급자재 분리작성 ⇨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 관급자재 일위대가표 직접인건비 견적처리 1식 ⇨ 표준품셈
도급공사	• 도급자재 추가 • 통합 광케이블 싱글 링 통신망 구성 설계도서 수정
관급자재	• 관급내역 중 - 수정 및 삭감액 : △ 607,955천원 - 누락추가 증감액 : 306,000천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전기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사 동종 주변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각지붕 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8,800	83,710	5,090	5,7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기와해체	• 해체제 재사용 : 해체제 미사용 적용
지붕해체	• 해체 공정 : 생석회,보토,적심,산자 → 생석회,보토 적용
마루기와의기	• 단수적용 : 8단 및 5단착고 → 5단 및 3단착고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 심사 착안사항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지붕공사 해체 적용
- 지붕해체에 따른 정확한 수량 검토

○○창고 증축 및 현대화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축연면적 1,001.64㎡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88,631	456,887	31,744	6.4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 공사	• 강관틀비계 적용
조적공사	• 벽돌쌓기에 포함된 소운반 제외
수장 공사	• 방부목 설치 - (데크, 35*150*2400(솔리드))→(데크, 25*150*2400(솔리드))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현장 여건에 적합한 가설물 적용
- 공정중 이중으로 계상된 인건비 검토
-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자재적용 등

○○운동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씨름장 설치 및 테니스장 철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05,703	1,292,483	21,406	7,0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 씨름장 모래 : 주문진 표준모래(금사) + 해사(중사) 적용
철거공사	• 해체제를 재사용하지 않는 철거는 건축목공의 품을 60%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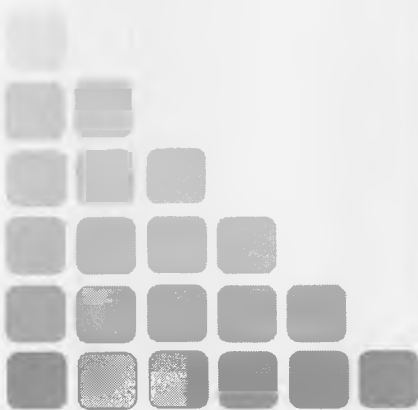
☐ 심사 착안사항

- 씨름장 여건에 적합한 재료(모래)사용 검토
- 철거에 따른 적절한 인건비 적용 확인

Part 3

부 록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Part 3. 부 록

경상북도계약원가 심사업무처리규칙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12-15 규칙 제 2605호

(일부개정) 2010-06-21 규칙 제 2656호

(일부개정) 2011-09-26 규칙 제 26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 나.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시·군
 - 라. 도 지방공기업
 - 마. 도 출연기관(다만, 100분의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개정 '10.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1.09.26)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 다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1.09.26)
- 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09.26)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1.09.2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삭제(11.09.26)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회의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등:)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등:)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물품 사양 :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직전도급 계약금액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 :		변경도급 예 정 액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 :	
사업 개요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Part 3. 부 록

[시행 2015.1.5.]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2014.12.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가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 (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

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원가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실제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 1) 계약원가심사부서의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원가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 \sim +1\%$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 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
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
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
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
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
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
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
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
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
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다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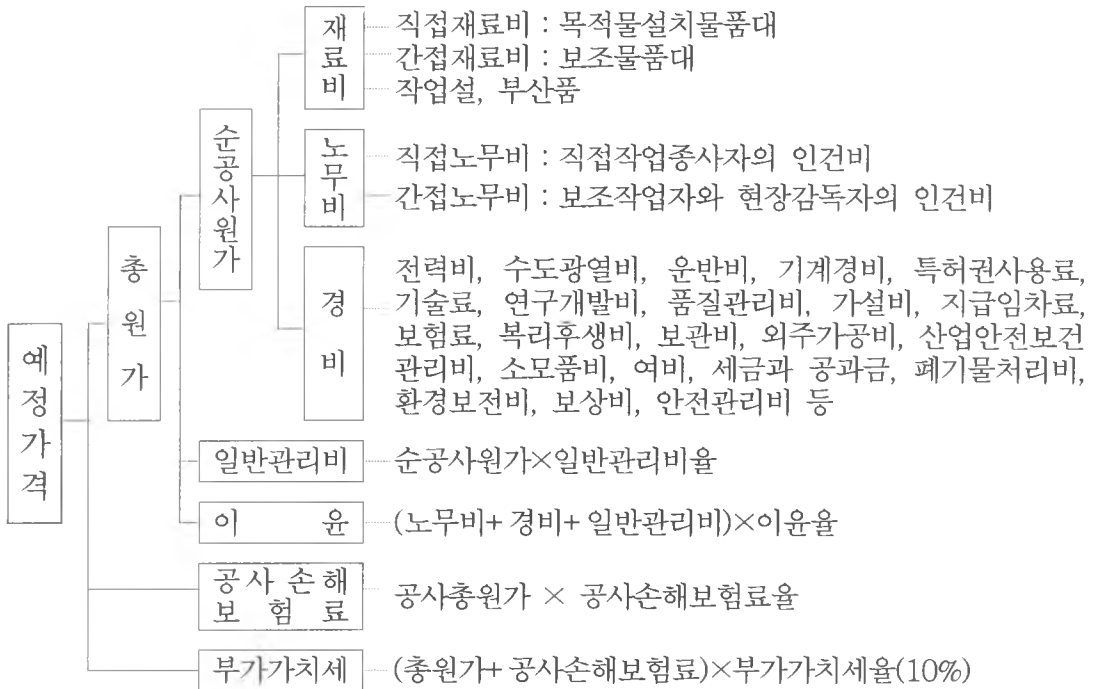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업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 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 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 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 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 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

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 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 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

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

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

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

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조원	월 1,160,5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201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
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〇〇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범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〇〇사·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원가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원가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원가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원가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원가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원가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원가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원가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원가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원가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원가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원가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원가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원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원가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원가심사부서)의 의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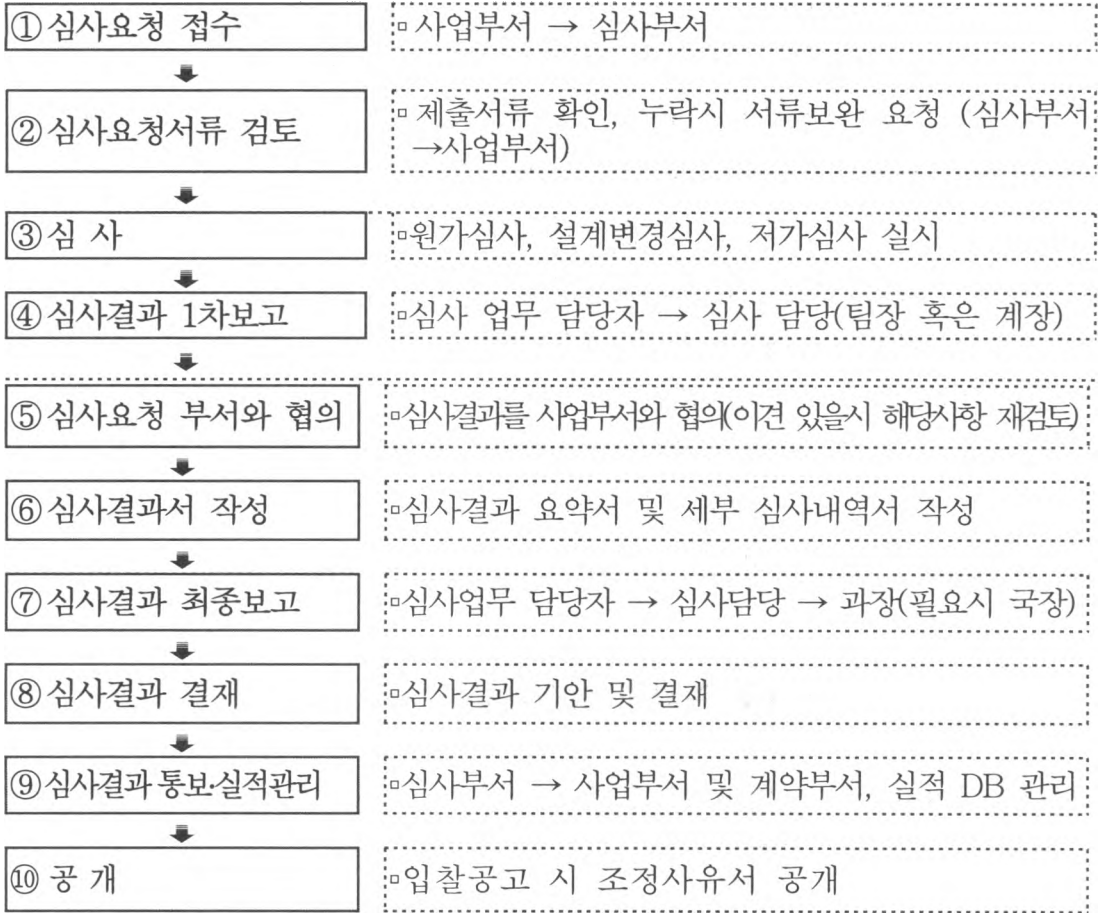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원가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원가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원가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원가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원가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원가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원가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체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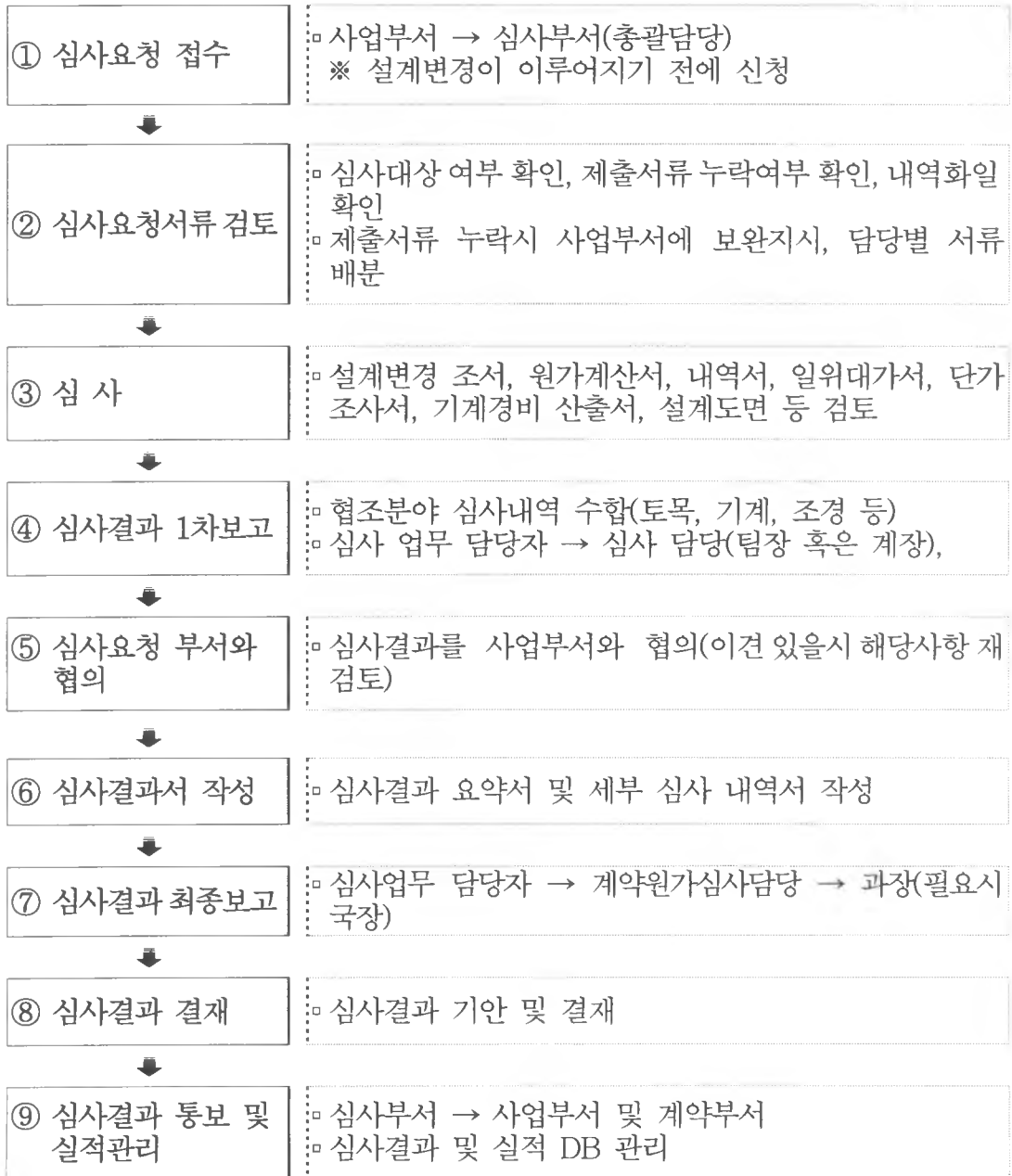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원가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원가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

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원가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원가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원가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원가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원가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원가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원가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계약원가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원가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원가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원가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원가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원가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원가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 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원가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정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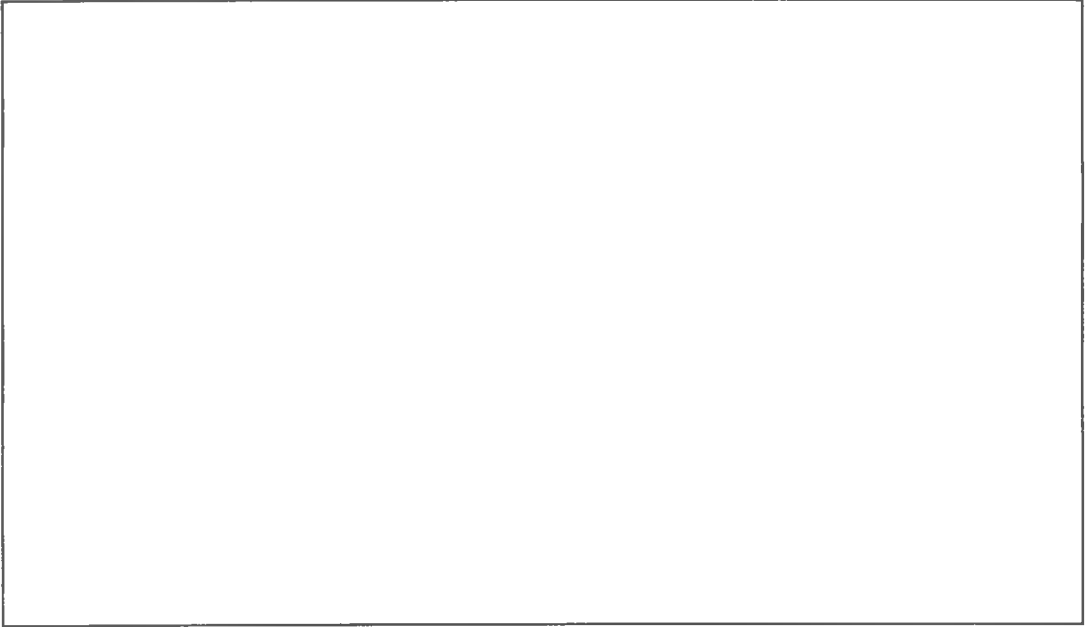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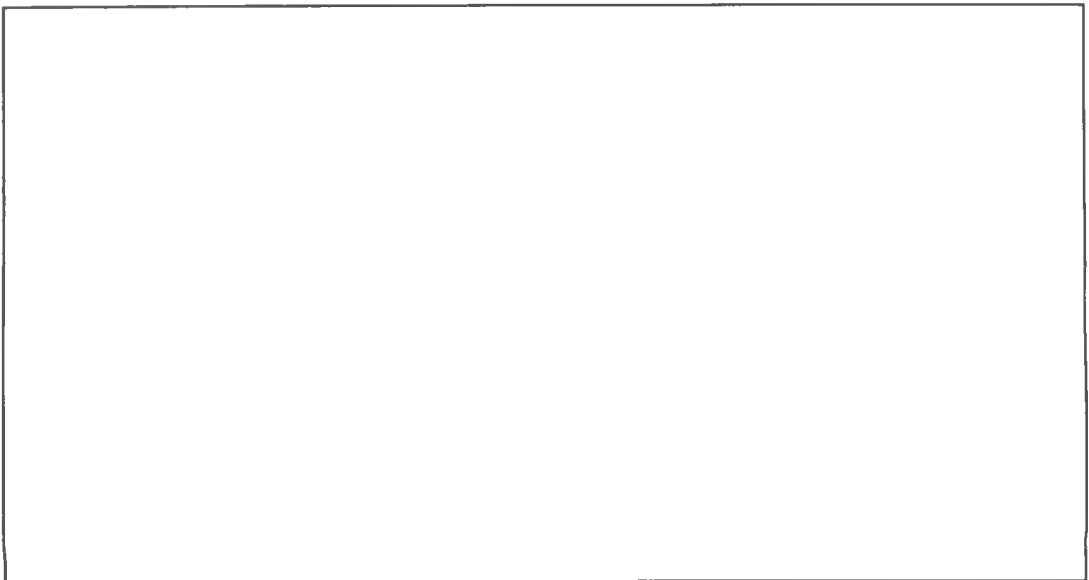
- (계약원가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 타 경 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역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원가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 체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 체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중
- -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원가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				

발신명의	
------	--